

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

의안	106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2년 9월 17일

제출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

1. 提案經緯

가. 1992년 9월 4일 제12회 영등포구의회 (임시회) 폐회중 개최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종태위원외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

2. 提案理由

가. 구민회관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세분하여 강화함으로써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임.

3. 主要骨子

가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. (안 제4조 제1항)

1. 구민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
2. 구민회관의 일부시설을 임대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
3. 구민회관을 증개축하거나 중요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

나.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. (안 제4조 제2항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

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設置 및 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 조 (운영 및 관리) 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구민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
 2. 구민회관의 일부시설을 임대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
 3. 구민회관을 증개축하거나 중요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
-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4 조 (운영 및 관리) ① <u>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 4 조 (운영 및 관리) ① <u>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구민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</u> 2. <u>구민회관의 일부시설을 임대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</u> 3. <u>구민회관을 증개축하거나 중요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</u> <p>② <u>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.</u></p>